##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6-15

제출연월일

2006. 3 9.

제 출 일

사천시장

#### 1. 의결주문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2조 내지 제4조)

○ 구성 : 위원장(본청 경리관) 포함 15인 이내

○ 임기 : 2년(연임 가능)

○ 기능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주민참여감독자 대상공사 및 감독자 위촉(안 제12조 및 제13조)
  - 대상공사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 의 공사(시행령 제60조 해당공사)
  - 감독자 위촉 및 임기 : 사업장별 1명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기획담당관

라. 기 타 : 중요사항 없음

1)입법예고(2006.1.23~2.23)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2)규제심사:해당없음

#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제4항 및 영 제59조·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①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시본청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영 제106조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시장은 영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②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

하여 심의한다.

-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한다.
-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 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

- 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②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 가격이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 1. 마을진입로 확 포장공사
  - 2. 배수로 설치공사
  - 3. 간이 상 하수도 설치공사
  - 4. 보안등공사
  - 5. 보도블럭 설치공사
  -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7. 마을회관공사
- 8. 공중화장실공사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제13조(주민참여 감독자 위·해촉) 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의 착공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이조에서 "감독자"라 한다) 1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②감독자의 임기는 당해공사의 착공일로 부터 준공검사일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 ③감독자는 당해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선정하여 관리·감독한다.
- ④시장은 감독자에게 감독자증을 교부하고, 감독자는 직무수행시 감독자 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⑤기타 감독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수당 및 등)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 및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런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6조 (감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工事)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③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⑤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감독범위·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메32조 (계약식의위원회의 설치·오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 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주민대표자"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 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 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 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 5. 그 밖에 지방자차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 1. 마을진입로 확장 · 포장공사
  - 2. 배수로 설치공사
  -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 4. 보안등공사
  - 5. 보도블럭 설치공사
  -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7. 마을회관공사
  - 8. 공중화장실공사
  -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 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 경우 또는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 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2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조서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 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심약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 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 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 ③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④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 1. 시·도위원회: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2. 시·군·구위원회: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